##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13 발의연월일: 2021. 5. 24.

발 의 자:백혜련·고영인·김영호

박홍근 · 앙이원영 · 오영환

윤관석 • 이형석 • 임호선

정필모 · 최혜영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아살해, 영아유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거나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형을 감경한 것으로,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임.

그런데 형법 제정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

지하였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함.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 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 는 것임(안 제251조, 제272조).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1조를 삭제한다.

제27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51條(영아살해) 直系尊屬이 恥	<u>&lt;삭 제&gt;</u>
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	
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分	
娩中 또는 分娩直後의 영아를	
殺害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	
<u> 役에 處한다.</u>	
第272條(영아유기) 直系尊屬이 恥	<u>&lt;삭 제&gt;</u>
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	
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영	
아를 遺棄한 때에는 2年 以下	
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